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펀드명 : 트러스톤 OCIO 연금솔루션 기본형 증권투자신탁 [혼합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① (생 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 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 ③ (생 략)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 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 (생 략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 략)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오기 정정	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	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

	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·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·게시해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	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·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·게시해야 한다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추가	<신 설>	<u>제38조의2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</u>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
-	<신 설>	<u>부 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